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37호
----------	--------

제출년월일 2024. 11.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가. 선수단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선수단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6조)
- 나. 선수단 인권보호 조치 관련 조항 신설(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9. 25. ~ 10. 15.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붙임)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나) 경기도 : 체육진흥과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직장운동경기부”를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직장운동경기부”를 “경기부”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부성 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체 육 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체육과장 이 상 익
	팀 장 직위·성명	체육정책팀장 권 두 택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 재 영(☎259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종목) 김포시청 <u>직장운동경기부</u>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인사위원회)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1. ~ 4. (생략)</p> <p>5. <u>직장운동경기부</u> 종목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p> <p>6. · 7. (생략)</p> <p>② ~ ⑦ (생략)</p> <p><u><신설></u></p>	<p>제3조(설치종목) ----- <u>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u> ----- ----- -----.</p> <p>제5조(인사위원회)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경기부</u> ----- -----</p> <p>6.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1. <u>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p> <p>2. <u>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u></p> <p>3. <u>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u></p>

<신 설>

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외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협의회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부성 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생략)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훈련의 사전통지 절차를 포함한다)
2.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 간 협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징계에 관한 사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김포시에 두는 경기 종목별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의 운동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급여”란 단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전적 보수를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선수단의 구성 및 임무)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
3. 감독: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며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
4. 코치: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지도

제5조(인사위원회)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승급 심의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4. 우수선수의 신규영입에 관한 사항
 5.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
 6. 단원의 요양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김포시장에인체육회상임부회장, 김포시체육회수석부회장, 김포시체육회사무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원임용) ① 시장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임용한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임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용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단원의 계약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의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단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
5.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10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비 지급) ① 훈련에 참가하는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비는 1일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단원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 일수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단원이 전국규모대회, 국제대회에 출전할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5조(포상금)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김포070		
정책명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이재영	전화번호 031-980-259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0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근거 규정 신설 - 선수단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규정 신설 -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관련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구 성 : 10명 내외[지도자, 선수, 인권전문가(1명 이상) 포함] 나. 협의내용 : 근무(훈련) 환경개선, 경기력 향상, 고충 및 권익보호 - 선수단 인권보호 조치 관련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폭력,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나. 사생활 보호 및 휴식,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다.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제17조제1항제4호 중 “모성보호“를 “ <u>모부성보호</u> “로 변경하겠다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김포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배정민/031-980-5582)			
체육과장 귀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문화체육관광부)(발체)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 장(직장운동경기부 소속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 장(직장운동경기부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 장(직장운동경기부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회외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외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